

□ 진단기준

< 산재보험 요양상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

전반적 정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어떤 외상이나 병소에서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시간적인 경과나 통증의 정도와는 부합하지 않는 국소적인 지속적 자발통이나 유발통이 있는 특징을 보이는 일련의 통증의 상황들을 말한다. 이러한 통증은 특정한 신경의 영역이나 피부분절을 따르지 않고 국소적으로 나타나며 감각이상, 혈관운동 이상, 운동이상, 발한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 등이 나타나면 병기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경과를 보인다

임상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유발되는 이벤트와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야 한다.
2.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¹⁾이 있어야 한다.
 - 1)감각이상 : 감각과민, 이질통
 - 2)혈관운동이상 : 체온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
 - 3)발한 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
 - 4)운동 이상/ 이영양성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
3. 평가 당시에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들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²⁾가 있어야 한다.
 - 1)감각이상 : 바늘로 자극하는 등의 자극에 대해 통각과민, 가벼운 접촉 자극, 냉온 자극, 심부 체성 압박, 관절 운동 등에 의한 이질통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 2)혈관운동이상 : 양측 체온의 1도 이상의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3)발한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 4)운동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다른 진단이 이러한 증상들이나 질환들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경우에는 진단에서 배제한다.

1) 증상이란 본인이 자각하여 느끼는 주관적 상태

2) 징후란 본인 혹은 의학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진찰하였을 때 보이는 상태